

의안번호	제 125 호
의결 년 월 일	1996. 12. 14. (제 59 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제출자	보은군수
제안년월일	1996. 12. 16.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의 안	125
변 호	

제출년월일 : 1996 . / 2 . / 5 .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 재 안 사 유

‘96. 7. 1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직.사무
실과소명칭의 변경으로 이를 개정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 사 회 과 장 ⇒ 사회복지과장
- 사 회 계 장 ⇒ 사회복지계장
- 의료보장계장 ⇒ 사회복지계장

☐ 근 거 법 령

-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
-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 내 용

-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등중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신구조문대비표(개정조례시) : 따로붙임

☐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자료 붙임

- 관계 법령발췌 : 따로붙임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제1조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제2조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제3조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에관한조례의 개정) 제4조(보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u>사회과장</u> 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u>사회계장</u> 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에관한조례의 개정) 제4조(보조금관리공무원) <u>사회복지과장</u>, . <u>사회복지계장</u>
제2조(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제3조(회계공무원의지정)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u>사회과장</u> ,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u>의료보장계장</u> 으로 한다. ② (생략)	제2조(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제3조(회계공무원의지정)① <u>사회복지과장</u> , <u>사회복지계장</u>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제11조(간사및서기)① (생략) ② 간사는 <u>사회과장</u> 이 되며 서기는 <u>사회계장</u> 이 된다. ③ (생략)	제3조(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제11조(간사및서기)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회복지과장</u> <u>사회복지계장</u> ③ (현행과 같음)

제 7 편 사 회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

제정 (1988. 10. 20 조례 제1103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생활보호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 금】 기금은 1963년 부터 1974년 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제 3 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이를 증식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이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은 이를 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파, 기금의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등 기금관리에 따른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조【보조금 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사회과장을기금출납명령관으로, 사회계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정한다.

부 칙 (1988. 10. 20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 (1977. 1. 15 조례 제 429호)

개정 (1979. 4. 3 조례 제 542호)

개정 (1979. 5. 12 조례 제 549호)

개정 (1982.12. 30 조례 제 842호)

개정 (1988. 1. 15 조례 제1038호)

개정 (1988.10. 20 조례 제1106호)

개정 (1989. 3. 10 조례 제1165호)

개정 (1990. 6. 27 조례 제1255호)

개정 (1992. 5. 1 조례 제1352호)

제 1 조【목 적】 이 조례는 의료보험법 제1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 3 조【회계 공무원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의 사회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 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5 조【수 입】 ①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납입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

제 7 편 사 회

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6 조【지 출】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 7 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결손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은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4. 사 제
5. 사 제

제 9 조【준 응】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7 편 사 회

- 부 칙 (1977. 1. 15 조례 제 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79. 4. 4 조례 제 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79. 5. 12 조례 제 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3.12. 30 조례 제 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8. 1. 15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8.10. 20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9. 3. 10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0. 6. 27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2. 5. 1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원 부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 료	소관		
보호기금			
상환금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	분
납입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〇〇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모 은 군 수			

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 료	소관		
보호기금			
상환금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	분
납입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〇〇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모 은 군 수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 료	소관		
보호기금			
상환금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	분
납입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 하있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모 은 군 수 귀하			

영 수 증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 료	소관		
보호기금			
상환금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	분
납입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인)			
모 은 군 수			

본
문
은
본

제 7 편 사 회

(별지 제2호 서식)

전

25

서 열 편 우

우표

-

三

10

제 7 편 사 회

후 편

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

독 측 장

제 금	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	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19 .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
를 취하게 됩니다.

19 년 월 일

보 은 금 수 안

제 7 편 사 회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 (1995. 1. 12 조례 제141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조례는 보은군 회남면, 회북면 대청호 수몰지역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수몰 지역주민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대청호 장학금(이하 "장학금"으로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장학회의 명칭】 장학회의 명칭은 보은군 대청호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3 조【장학생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슬선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 2 장 장학회운영위원회의 설치

제 4 조【장학회 운영위원회 설치】 장학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1. 회남·회북면군의회의원

2. 회남·회북면장

3. 회인중학교장

4. 회남국민학교장

5. 회인국민학교장

6. 회남면이장대표

7. 회북면이장대표

8. 기타 회남·회북면 관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제 6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7 편 사 회

1. 장학생선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특별히 부의한 사항
4. 기타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조【위원의 임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보컬 위촉된 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회의록 비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가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과장이 되며 서기는 사회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3 장 장학기금관리 운영

제 12 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대청호 수몰주민에 대한 국가 또는 충청북도 특별지원자금
2. 보은군에서 지원한 자금
3. 기타 독지가의 기탁금

제 13 조【장학기금의 관리】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은 위원장 명의로 예치하고 위원장의 명에 따라 간사가 관리한다.

② 장학기금은 이자를 최대한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증식이자는 장학기금으로 환입한다.

③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장학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4 조【장학기금 수혜범위】 이 장학기금의 수혜범위는 제1조의 취지에 따라 서기 1980년 6월말 이전부터 회남면 전지역과 회북면 죽암2리, 신대리, 용곡1리에 거주하던 주민으로서 수몰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있던 주민이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타 지역에 이사하

제 7 권 사 회

였다가 다시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자의 직계비속으로 한다.
단, 부모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5 조【장학생의 자격】 제14조의 수혜범위에 해당하는 주민의 비속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재학생(편입학결정자 포함)
2. 기타 군수가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자

제 16 조【장학생의 추천】 ① 제15조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리의 이장을 통하여 면장을 경유 위원회에 추천되어야 한다.

② 장학생 추천은 매학년 1학기 개시 10일전까지 위원회에서 접수되어야 한다.

제 17 조【장학생의 추천】 ① 장학생의 선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이 조례 이외의 장학금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혜를 받고 있는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18 조【장학금액】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9 조【장학금 기금】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30일이내에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분의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제 4 장 보 칙

제 21 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학금 지급개시년도 및 지급시기】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 개시년도는 1996년 1학기부터 지급할 수 있다.